

● 제268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서남권글로벌센터 외국인주민
생활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16. 6. 16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서울특별시장 제출 】

의안번호 1216

I. 동의안 개요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가. 제출자: 서울특별시장
- 나. 제출일: 2016. 5. 30
- 다. 회부일: 2016. 6. 1

2. 제안이유

- 가. 서남권글로벌센터는 외국인주민 및 서남권지역 재중동포의 지역사회 생활 안정 및 정착을 돕기 위한 상담, 교육, 문화체험, 의료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지원시설로,
- 나.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경험을 축적한 기관에 시설을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시설명 : 서남권글로벌센터
-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 40
- 시설규모 : 934.74㎡(지하1층, 지상4층)
- 이용대상 : 외국인주민 및 서남권지역 재중동포

나. 위탁내용

- 위탁기간 : 3년(2017.1.1.~2019.12.31.)
- 위탁사무
 -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의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외국인주민 대상 노무, 법률, 생활 등 상담, 의료 지원
 - 외국인주민의 교육·문화행사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 사업예산의 집행과 결산에 관한 사항
 - 기타 외국인주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시설 및 외국인주민에 대한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소요예산 : 540,814천원(2016년 기준)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4조의3

- 민간위탁 추진현황
 - 1차 최초위탁 : 2010.5.10~2012.5.9(2년) (사)세계선린회
 - 2차 재계약 : 2012.5.10~2014.5.9(2년) (사)세계선린회
 - 3차 재계약 : 2014.5.10~2016.12.31(2년8개월) (사)세계선린회

라. 민간위탁의 필요성

- 외국인주민 및 서남권지역 재중동포를 위한 다국어상담, 교육, 의료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한 기관에 위탁운영 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서남권지역 재중동포의 증가에 따른 지속적 서비스를 위하여 체계적 네트워크 형성과 효율적 운영체계를 갖춘 비영리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의3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7조(지원의 범위), 제20조(업무의 위탁)

나. 예산조치 : 2017년 예산편성 요구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김태호)

1. 동의안 제출 개요

- 본 동의안은, 그동안 민간위탁으로 추진해오던 ‘서남권글로벌센터 외국인주민 생활지원 사업 운영’에 관한 사무가 금번으로 민간위탁 계약 연속 4회 차를 맞이함에 따라,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¹⁾ 제2항의 단서 조항에 의거하여,
 - 동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지속할 것인지(재위탁)에 대하여 서울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시장이 민간위탁하려는 상기의 ‘서남권글로벌센터 외국인주민 생활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무 내용은,
 - 외국인주민 대상 노무·법률·생활 등 상담과 의료 지원 서비스, 외국인주민의 교육·문화행사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등 임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매 4회차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서남권글로벌센터 외국인주민 생활지원사업 운영 개요

- ‘서남권글로벌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8조2)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외국인 지원시설로,
 -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11조3)와 상기의 동 조례 제7조4)에 따른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을 지원함.
 - 동 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업은 순수 시비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음⁵⁾.

- 상기 동 센터는 기존의 ‘영등포 글로벌빌리지센터(2009년 개관, 당시 영등포구 운영)’와 ‘서울외국인근로자센터(2010년 개관, 민간위탁 운영)’를 통합하여 2014년에 개관한 것으로, 서남권 외국인주민에 대한 원스톱(One-Stop) 종합서비스센터 기능을 수행함.

2)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8조(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7조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법인·단체의 직원을 지원시설에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4) 제7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

3.~ 9. (생략)

5) ' 16년 예산 : 생활지원사업 1,180백만원, 비즈니스지원 1,760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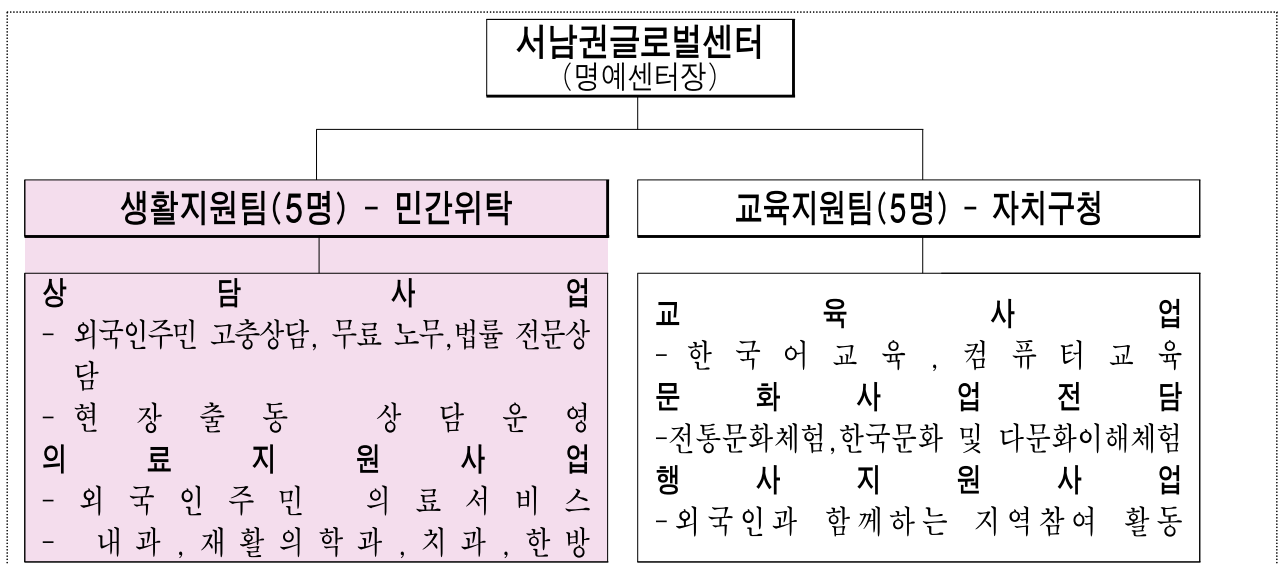
- 참고로, 현재 서울시에는 아래 <표 1>과 같이, 서울글로벌센터(종로구 소재)를 중심으로 2개의 권역별 글로벌센터를 운영 중에 있음.

<표1. 서울시 글로벌센터 운영 현황>

센터명	위 치	규모	개관일	비 고
서울글로벌센터	종로구 종로 38(서린동), 4~6층	1,134.3㎡	'08. 1.23	시소유
서남권글로벌센터	영등포구 도신로 40	935㎡	'14. 9. 1	시소유
동대문글로벌센터	중구 마른내로 146	289㎡	'15.10.7	임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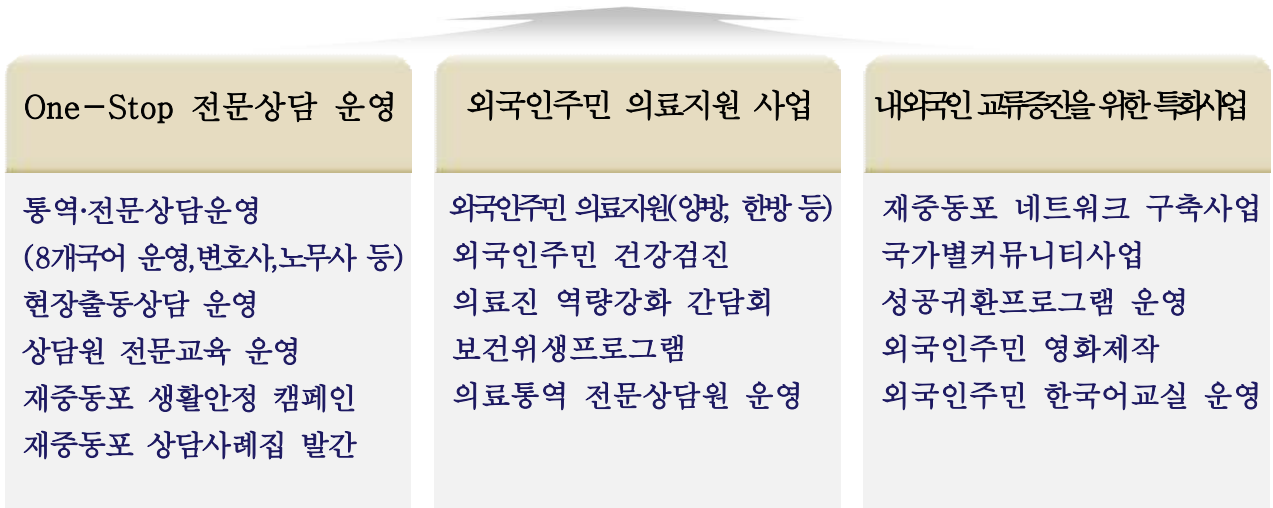
- 동 센터의 운영은 크게 외국인에 대한 ‘생활지원’ 업무와 ‘교육지원’ 업무로 구분되는데, ‘생활지원’ 업무의 경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며, ‘교육지원’의 경우에는 자치구(영등포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형태임.
- 2016년 현재, 동 센터의 조직도와 운영방향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아래 <그림 1>과 <그림 2>와 같음.

<그림1. 서남권글로벌센터 조직도>



<그림2. 서남권글로벌센터 생활지원팀 2016년 추진방향>

외국인주민 한국사회 적응지원을 통한 서울 이미지



- 금번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업무는 상기 업무 가운데 ‘생활 지원팀’ 업무에 해당하는 ‘외국인 생활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사무임.
- 이는 동 업무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서울외국인근로자센터’가 설립되었던 2010년부터 민간위탁의 형태로 운영되어 왔고, 2016년 6월 현재 민간위탁 운영 3회 차를 맞고 있으며, 2016년 12월 31일자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려는 것임. 이에 관련 조례규정에 따라 연속하여 민간위탁 4회 차를 맞이하여, 의회에 재위탁 동의를 받으려는 것임.

<서남권글로벌센터 민간위탁 추진 현황>

구분	1차	2차	3차
기간	' 10.5.10~ ' 12.5.9 (2년)	' 12.5.10~ ' 14.5.9 (2년)	' 14.5.10~16.12.30 (2년 8월)
선정방법	공개모집	재계약	재계약

3. 민간위탁대상사무 지속 여부에 대한 법적검토

-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행정권의 포기과 공익성 실현의 왜곡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치국가의 원리상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할 것이 요청됨.

- 그런데,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려는 ‘서남권글로벌센터 외국인주민 생활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사무는 외국인 주민 대상 노무, 법률, 생활 등 상담과 의료지원 등 대체로 비권력적이고 전문기술적인 사무가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특별한 문제는 초래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또한, 이는 현행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6)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그 기준이 적합한지와 동 조례 제6조7)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내용으로 적

6)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7)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합여부를 판단해 볼 때도, 상기 센터의 외국인주민생활지원 사업 운영에 관한 사무는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그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됨.

4. 민간위탁 대상사무 지속 여부에 대한 정책적 검토

-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은 효율성 제고와 공급비용 절감 등 다양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서비스와 같은 휴먼서비스의 경우 그 특성상 서비스의 질과 전문성 제고를 민간위탁의 일차적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임.
- 따라서, 상기 센터의 외국인주민생활지원 사업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은 민간위탁을 통한 서비스 품질의 향상, 전문성의 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한 이용자의 복지향상과 같은 질적 측면에서 효과가 뚜렷한지 여부가 핵심 요소라 할 것임.
- 동 위탁 사무는 서울시 재한외국인 및 서남권지역 재중동포에게 지역사회 생활 안정과 정착을 돕기 위한 상담, 교육, 의료지원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그 사무의 특성상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 경험에 기반 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의 노하우를 지닌 민간단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한다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 이에 상기 센터의 외국인주민생활지원 사업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는 본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짐.